

특수건강진단

★실시목적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, 분진, 화학 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·유지 하기 위함

★실시대상

-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- 화학적 인자(벤젠, 톨루엔, 석면 등 163종)
- 분진(곡물분진, 광물성분진, 면분진, 나무분진, 용접흄, 유리섬유 분진) 6종
- 물리적 인자(소음, 고열 등) 8종
- 야간작업('14.1.1 시행)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('13.8.6 개정)

★실시방법

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



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



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



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

★실시주기

-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
※ 자세한 시기 및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

★실시 후 조치사항

-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,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
-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

구분	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
가	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
나	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착용,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)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
다	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)
라	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

-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,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,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 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

구분	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
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	황린 성냥,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, 폴리클로리네이트디테르페닐(PCT) 등 8종
허가 대상 유해물질	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알파-나프탈아민과 그 염, 크롬산아연 등 13종
특별관리물질	벤젠, 1,3-부타디엔, 1-브로모프로판 등 16종

★위반시 벌칙

-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-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: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(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)

※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

★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고,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



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연락처

서울청	02)2250-5773	부산북부지청	051)309-1557
서울강남지청	02)3465-8491	창원지청	055)239-6584
서울동부지청	02)2142-8875	울산지청	052)228-1882
서울서부지청	02)2077-6172	양산지청	055)370-0931
서울남부지청	02)2639-2276	진주시청	055)760-6562
서울북부지청	02)950-9812	통영지청	055)650-1944
서울관악지청	02)3282-9052	대구청	053)667-6364
중부청	032)460-4405	대구북부지청	053)605-9153
인천북부지청	032)540-7986	포항지청	054)271-6834
경기지청	031)259-0254	구미지청	054)450-3556
평택지청	031)646-1185	영주시청	054)639-1151
부천시청	032)714-8784	안동지청	054)851-8036
안양지청	031)463-7353	광주청	062)975-6332
안산지청	031)412-1978	전주시청	063)240-3393
의정부지청	031)850-7633	익산지청	063)839-0036
고양지청	031)931-2871	군산지청	063)450-0532
성남지청	031)788-1576	목포지청	061)280-0177
강원지청	033)258-3585	여수지청	061)650-0134
강릉지청	033)650-2522	광주청(제주)	064)728-6132
원주시청	033)769-0821	대전청	042)480-6303
태백지청	033)550-8622	청주시청	043)299-1312
영월출장소	033)371-6233	천안지청	041)560-2862
부산청	051)850-6477	충주시청	043)840-403
부산동부지청	051)559-6643	보령지청	041)930-6146

야·간·작·업 근로자의
건강보호를 위해
특수건강진단을
실시해야 합니다.



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('14.1.1시행)

★실시목적

-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함
-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“야간작업”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

★실시대상

야간작업(2종) [시행규칙 제98조 제2호, 별표 12의2]

- 가.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- 나.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※ 가목은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(1년간 48회 이상), 나목은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(1년간 720시간)인 경우 대상이 됨

★실시시기 및 주기

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[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, 별표 12의3]

- 배치 전
- 배치 후 첫 번째: 6개월 이내
- 주기: 12개월

- ※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,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
- －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(※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)

★대상질환 및 검사항목

-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, 소화기질환, 유방암 등을 대상질환으로 하고,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
-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,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

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
[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, 별표 13]

라. 야간작업

유해인자	제1차 검사항목	제2차 검사항목
야간작업	(1)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	임상검사 및 진찰
	(2)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	①신경계 : 심층면담 및 문진 ②심혈관계 : 혈압, 공복혈당, 당화혈색소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 콜레스테롤, LDL 콜레스테롤, 24시간 심전도, 24시간 혈압
	(3) 임상검사 및 진찰	③ 위장관계 :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: 유방촬영, 유방초음파
	①신경계 :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: 복부둘레, 혈압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: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: 관련 증상 문진	

※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

★시행일('14. 1. 1)

-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➡ 2014년 1월 1일
-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➡ 2015년 1월 1일
-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➡ 2016년 1월 1일

※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

★경과조치

- －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「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」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,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
- ※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둠
- － 시행일 이후 부터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, 배치 후 첫 번째(6개월 이내),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

★실시기관

- －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*에서 실시하여야 함
- *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
(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.moel.go.kr) - 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→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

★건강관리구분판정

- － ‘야간작업’ 특수건강진단도 현행과 같이 정상(A), 질병 요관찰자(C), 유소견자(D)로 구분*하되,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‘개인적 요인’ 과 ‘업무상 요인’ 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직업병(C₁, D₁)과 일반 질병(C₂, D₂) 구분은 하지 않음
- * 통계 코드의 구분을 위해 C_N, D_N으로 명명(야간(Night)작업)

★기타사항

- －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하며 이 경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



●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련 Q&A ●

Q1 |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- A1** 해당 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“야간작업” 특수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
- － 지난 6개월동안 근무한 시간 중 시행규칙 별표 12의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“야간작업을 24회 이상 또는 360시간 이상 실시” 한 경우에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
- 이러한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－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1년동안 야간작업이 48회 이상 또는 720시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.

Q2 |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?

- A2**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

Q3 |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?

- A3** 예, 그렇습니다.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, 업무의 내용, 노동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,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－ 따라서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